



보 도 자 료

담당부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시민교육협력부
담당	본부장 이상화 (02-3156-6103) 부 장 이주영 (02-3156-6180)

< 매 수 : 총 6 쪽 (붙 임 : 4 쪽 포함) >

양평원 "2021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개시

❖ 여성·시민 등 민간단체 대상 공모사업 공개모집

- 신청기간 : 2021. 1. 13.(수) ~ 1. 29.(금) 24:00까지
- 신청자격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신청방법 : 여성가족부 사업지원포털(<http://wsp.mogef.go.kr>) 온라인 접수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나윤경, 이하 양평원)은 이번달 29일까지 '2021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이하 공모사업) 참여단체를 공개모집한다.
-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은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연계 프로그램 발굴·지원을 위하여, 민·관 협력 차원의 다양한 사업 전개를 통한 효과를 높이고, 민간단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 올해 공모사업은 3개 사업유형으로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 확산 ▲여성사회참여 확대 ▲여성폭력 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으로, 신청은 1개 단체당 1개 사업만 가능하다.
-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현안 사항인 '청년 여성의 역할모델 제공,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2030 위기 여성 자살예방을 위한 아웃리치 사업, 치유·소통 공간 제공 및 활동 지원'이 지원사업 분야 사업내용으로 추가되었다.

- 신청자격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기관을 대상으로 1. 13.(수) ~ 1. 29.(금) 여성가족부 사업지원포털(<http://wsp.mogef.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 사업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사업지원포털(wsp.mogef.go.kr), 양평원 홈페이지(www.kigepe.or.kr)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수된 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2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설명회는 1월 19일(화) 오후 2시 zoom을 통해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공모사업 내용, 사업계획서 작성과 예산편성 기준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시민과 단체는 누구나 접속하여 시청할 수 있다.
- * 양평원은 올해 공모사업 주관기관으로서, 공모·선정, 사업비 교부, 평가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붙임] “2021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공고문 1부. 끝.

♠ 추가문의 : 시민교육협력부 최유현(☎02-3156-6183)

♠ 출 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 공 고

- 여성가족부 사업지원포털(단체협력네트워크)시스템(<http://wsp.mogef.go.kr>)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gepe.or.kr>)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2. 지원사업 분야

사업유형	사업내용(예시)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 속 성평등 문화확산 사업(성별갈등 해소, 성차별요소 점검개선 등) ■ 대중매체의 남녀차별 사항 모니터링 및 개선 활동 ■ '여성·평화·안보' 등 글로벌 성평등 인식 확산 ■ 여성친화도시 민·관 협업사업 ■ 기타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여성사회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여성의 역할모델 제공 및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여성근로자의 경력유지 강화 및 예방 ■ 사회 각 분야 여성인재 양성 및 여성대표성 제고 방안 ■ 기타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여성폭력 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 위기 여성 자살예방 위한 사이버 아웃리치 사업, 치유·소통 공간 제공 및 자조모임 등 활동 지원 ■ 여성·아동 권익보호 및 지역사회 안전역량 강화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인식 개선 사업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디지털성범죄·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여성·아동 피해자 보호·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프로그램 ■ 기타 여성폭력 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

★ : 영역별 중점사업 및 코로나19로 인한 주요현안으로 관련 단체 우선선발

※ 자부담 의무 비율 설정(국고보조금의 10% 이상)

2. 사업추진 기간

- 사업추진 기간 : 사업선정일 ~ 2021. 11. 30.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 사업신청 시 법인설립허가증·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등 해당사항 1개의 파일 첨부 제출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1. 13.(수) ~ 1. 29.(금) 24:00까지
 - * 마감 당일 신청이 폭주될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접수 요망 (1. 29.(금) 24:00 이후 접수 자동 차단)
- 신청방법 : 여성가족부 사업지원포털 (<http://wsp.mogef.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사업 신청(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 여성가족부 업무지원포털(<http://wsp.mogef.go.kr>) → 공모사업 → 자료실 → 사업신청 매뉴얼 참조

5.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컨소시엄 추진계획서 1부(컨소시엄 사업 추진단체만 해당)
 - * 여성가족부 업무지원포털에 접속하여 사업신청서(단체소개, 사업목적, 사업 추진방법, 세부사업 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구성 등) 제출
 - * 컨소시엄 사업 신청의 경우 컨소시엄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업무지원포털에서 신청서 제출 시 첨부(컨소시엄 추진계획서→자료실→다운로드 활용)

6. 지원규모 및 원칙

- 지원 규모 : 사업별 최대 2천만원(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최대 3천만원)
 - ※ 자부담 의무 비율 설정(국고보조금의 10% 이상)
- 지원 원칙 : 1개 단체 1개 사업 원칙(컨소시엄 참여단체도 1개 사업 신청으로 간주)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또는 보조금으로 직접 수행하는 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한 지원은 제한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 동일 사업, 동일 수혜자를 대상으로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 기관 운영에 관련된 자본적·경상적 경비(사무실 임차료, 상근직원의 급여, 자산성 물품구매) 지출 성격의 사업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일회성) 사업, 학술적 성격을 지닌 연구사업,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경우
- 최근 3년 연속하여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동일 단체의 동일한 사업
- 최근 2년 이내('19년, '20년)에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으로 선정 후 중도 포기단체

7.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1. 1. 19.(화) 14:00 -

○ 주 소 : zoom활용 온라인 진행(비대면)

※ zoom주소는 여가부 업무지원포털(단체협력네트워크)시스템, 양평원 홈페이지에 사전 안내

○ 내용 : 지원사업분야, 사업내용, 사업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요령, 기타 유의사항 등

8. 심사기준 및 선정결과 발표

○ 심사기준 : 단체의 사업 수행역량, 사업의 적합성 및 기대성과, 예산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선정

▪ 과제별 심사 기준

- 사업 수행역량 : 사업전담인력 확보 및 전문성, 사업과 관련된 업무추진 경험
- 사업의 적합성 : 정책 연계성, 사업의 타당성(충실성, 구체성), 사업의 독창성 및 경제성
- 사업 기대성과 :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사업 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
- 예산의 적절성 : 사업내용 및 편성 기준에 따른 적절한 예산 편성

○ 선정결과 발표 : 2021. 2월말

○ 결과 통보 : 여성가족부 사업지원포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단체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협의하여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보조금을 1차(70%), 2차(30%)로 나누어 지급함
 - * 선정 단체는 보조금 지급 전, 이행보증보험증권(자부담 편성)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
- 사업완료시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사업성과물, 정산보고서 제출

10. 기 타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임의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등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이하 벌칙 규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2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결정 및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 등을 명할 수 있음
- 지원금의 횡령·유용 등 법령 위반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 중도포기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귀책사유가 단체에 있을 경우 향후 2년간 사업 참여가 배제됨
-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대표(책임)단체에서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 등 관련서류 제출
- 선정 심사 점수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음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대외협력본부 시민교육협력부(☎ 02-3156-6183)으로 문의바람